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공적이 현저한 저연차 직원도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시장표창 추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표창장 수여대상에서 최소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
(안 제7조제1호)
- 나. 표창장 수여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함(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)
- 다. 표창권자 규정 내용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
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4. 3. ~ 4. 23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행정국 인사과 임고은 (☎ 2133-5731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(이하 “표창권자”라 한다)는 다음과”를 “사람(이하 “표창권자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
2. 시 소속기관의 장(3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

제7조제1호 본문 중 “및 시”를 “공무원 및 시·자치구”로, “공무원 및 임직원(이하 “공무원등”이라 한다)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”를 “임직원(이하 “공무원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”을 “우수한 시 소속기관, 자치구, 자치구 소속기관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표창권자)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<u>자(이하 “표창권자”라 한다)</u>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<u>표창장, 상장 :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, 시 소속기관의 장(3급 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</u></p> <p>2. <u>감사장 : 시장, 시 소속기관의 장</u></p> <p>제7조(표창장 수여대상)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</p> <p>1.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, 시·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<u>공무원 및 임직원(이하 “공무원등”이라 한다)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. 다만, 공적이 현저하여 제13조에 따른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</u></p>	<p>제4조(표창권자) ----- ----- <u>사람(이하 “표창권자”라 한다)</u>은 다음 각 호와 ---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</p> <p>2. <u>시 소속기관의 장(3급 이상 공무원 및 소방서장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</u></p> <p>제7조(표창장 수여대상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공무원 및 시·자치구 임직원(이하 “공무원등”이라 한다) <단서 삭제></u></p>

하지 않은 공무원등에게도 수
여할 수 있다.

2.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
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
속기관

3.·4. (생략)

제18조(시행세칙) 이 조례 시행에
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
따로 정한다.

2. -----

----- 우수한 시 소속기관,
자치구, 자치구 소속기관

3.·4.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시행세칙) -----
필요한 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안은 표창 추천대상의 근무연수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,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 및 현행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이 존재하지 않음

4. 작성자

행정국 인사과 임고은(2133-5731)